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38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 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승수·김용판

박 진・양금희・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"을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(이하 "대도시 시장"이라 한다)은"으로, "계획을"을 "계획(이하"연도별 시행 계획"이라 한다)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"를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"을 "연도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 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 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6조(연도별 시행 계획) ①문화 제6조(연도별 시행 계획) ①----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 | -----특별시장·광역 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이 조에서 "시・도지사" 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 라 한다)는 기본 계획에 따라 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 시행하여야 한다. 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 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(이 하 "대도시 시장"이라 한다)은----계획(이하 "연도별 시행 계 획"이라 한다)을---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 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----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장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③ 연도별---시행 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